

대구지방법원 2023. 3. 31 선고 2022가단12376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예현지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용찬

변 론 종 결 2023. 3. 10.

판 결 선 고 2023. 3. 31.

주 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8. 6. 4. 체결한 부동산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18. 6. 7. 접수 제157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6. 소외 C에게 금80,000,000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일 2017. 12. 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C이 그 중 50,000,000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그래서 원고는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차482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그 지급명령은 2021. 8. 11.자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C은 2018. 6. 4.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18. 6. 7. 접수 제15719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1995. 3. 21. 피고의 피상속인인 소외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D 사망 후인 2011. 7. 14. 같은 날 피고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피고는 C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2.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를 포함한 C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와 1999. 9. 21.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고, 피고는 2011. 7. 12.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명의신탁하였다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하여 피고가 소유명의를 회복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및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사해행위가 아니다.

3. 판 단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하고,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C이 무자력이었던 사실을 인정한다. 그리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1. 7. 12. 당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다른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부동산만 C에게 증여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8. 6. 7.경까지 C이 7년간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해 온 사실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명의신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화

별지